

연차유급휴가 개정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

- ☞ 2018.5.29부터 입사 1년차 신입사원에게도 최대 11일, 2년차에는 15일 포함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
- ☞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

※ 아래 내용은 기존의 행정해석에 개정법령의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, 향후 개정법령을 반영한 새로운 행정해석이 있는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1 개정 주요내용

□ 신규입사자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

- (현행) 근로기준법상 신규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아 다음해에 지급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 (입사 최초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었음)
- (개정) 신규입사자는 입사최초 1년간 11일, 이후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됨 (입사 1년차 근로자도 '연차 가불'없이, 2년간 포함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음)
*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

□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

- (현행)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,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① 업무상 부상·질병으로 인한 휴업, ② 출산전후휴가 및 유·사산휴가로 규정
- (개정)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봄
*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

2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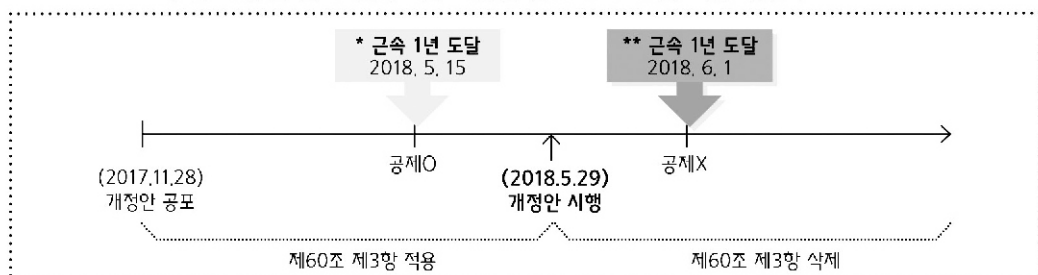
□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

- 신규입사자 연차휴가일수 확대는 개정법 시행일 당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
- ① 법 시행일 이후 신규 입사한 근로자, ② 법 시행일 당시 근속 1년 미만인 재직 근로자 모두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공제 없이 부여받음
- 육아휴직기간 출근간주는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

□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입사해, 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적용 방법

- 법 시행일 당시 이미 입사한 근로자는, 법 시행일 이전 최초 1년간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의 공제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

< 법 시행일 현재 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방법 >



* (개정법 시행일 기준 근속 1년 초과)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에 지급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, 연차휴가가 공제됨

** (개정법 시행일 기준 근속 1년 미만) 개정법 시행 이후 근속 1년이 계속되므로,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 없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됨

□ 신규입사자가 근속 1년 미만 중도 퇴사하거나 근속 1년 후 퇴사하는 경우,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방법

○ 근로자가 근속 1년을 채우기 전 퇴사하는 경우

-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휴가 일수에서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

(예시) 1.1일 입사자가 7월 중 퇴사(연차유급휴가 3일 사용)

- 6일의 휴가 중 3일을 제외하고 3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

○ 근로자가 근속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

- 처음 1년간 발생하는 11일에 근속 1년으로 발생하는 15일을 더해 총 26일의 휴가일수에서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

(예시) 입사 1년 2개월 경과 후 퇴사(연차유급휴가 5일 사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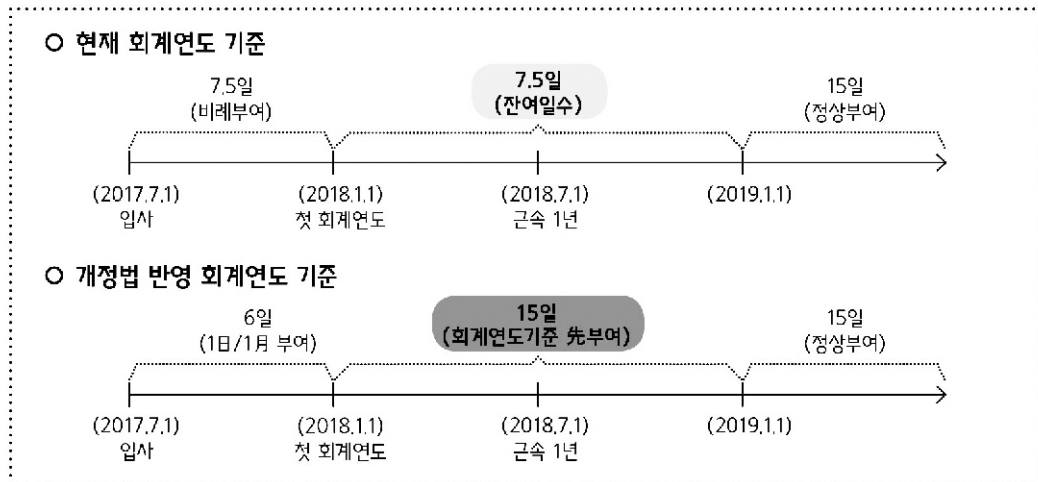
- 26일의 휴가 중 5일을 제외하고 2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

□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

○ 고용노동부는 “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시 중도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”고 봄 (근로기준법 68207-620, 2003.5.23)

-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방법은 기업 여건에 따라 부여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

<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방법 >



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는 경우 및 자녀 2명에 대해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(총2년)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

○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

○ 자녀 2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직기간 및 복직 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

- 이 경우, 최초 1년간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 1년간 휴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, 복직 후 바로 미사용 수당 지급 필요

서체 파일 저작권으로 머리 아픈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하여 '중소기업 전용서체' 탄생!

중소기업중앙회는 더 가까운 곳에서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 한마음체 (고딕·명조)를 배포합니다. 저작권 고민 없이 광고, 상표, 인쇄물, 현수막,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다운로드 및 라이선스 확인 www.kbiz.or.kr